

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·분리·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

(제5조의2 관련)

1. 회수·분리 기준

- 가. 냉장고, 에어컨디셔너,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.
- 다. 회수 후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.

2. 보관 기준

- 가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, 충전 중인 용기,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,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나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,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.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, 외부에서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℃ 이하로 유지하되,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3. 처리 기준

- 가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나.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